

<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 >

발부받은 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고지서를 발부한 국토관리사무소에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해 드리게 되고, 당시 운행이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임차인을 수사하게 되며, 귀하의 과태료부과절차는 대기상태로 전환되고, 임차인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귀하의 과태료 부과절차는 진행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하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고지서에 기재된 과태료(**20%감경**) 부과고지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발송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062-970-6361, 062-970-6367
- 과태료 수납 관련 : 062-970-6321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 타인명의 카드 납부 시 인근 국토관리사무소에 직접방문 납부가 가능하오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1항제1호	50	70	100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1항제1호	80	120	160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1항제1호	150	220	300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1항제1호	30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1항제1호	50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1항제1호	100		

※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로법 제117조제1항제2호)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